

고 시**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62호****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지정**

건설교통부 제428호(1979.11.22)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35호(2007.07.12)로 변경지정 고시되고, 종로구고시 제2009-32호(2009.06.05)로 변경지정 고시된 종로구 청진동 188번지 일대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역변경 (경미한 사항 변경)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09년 10월 1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구역명	위 치	시행면적 (㎡)	대지면적 (㎡)	정비기반시설 (㎡)	비고
-	청진구역 제5지구	청진동 188번지 일대	3,567.8	2,887.8	680.0	-

3. 건축계획

구분	구역명	대지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율 (%)	층 수 (지상/지하)	높이 (m)	주용도	비고
기정	청진구역 제5지구	2,887.8	39,370 이하	45이하	943 이하	지하6층, 지상25층 이하	100 이하	업무시설, 근린생활 시설	-
변경	청진구역 제5지구	2,887.8	41,000 이하	49.4 이하	1000 이하	지하6층, 지상25층 이하	104 이하	업무시설, 근린생활 시설	-

4. 토지이용계획 : 변경없음

5.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: 변경없음

6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: 변경없음

7. 변경사유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09호(2008.11.13)로 고시된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에 지하입체공공보행통로를 조성토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용적율 및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추가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.

8. 관계도서 열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(☎ 731-1424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